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26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8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18나202239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18나2022402(병합)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
원고, 항소인	A
피고, 피항소인	1. B 2. [redacted]시 3. [redacted]시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8. 4. 4. 선고 2017가합547147, 2017가합587282(병합) 판결
변 론 종 결	2018. 9. 13.
판 결 선 고	2018. 10. 18.

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

 원고의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.

2. 원고의 피고 B, [redacted]시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3. 원고와 피고 B, [redacted]시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26

시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[redacted]공사가 2017. 5. 22. [redacted] 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7년 금제1124호로 공탁한 237,121,5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

1) 원고는 2003. 1. 21. D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[redacted]시 E 답 2,681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매매대금 290,000,000원에 매수하되, 특약사항으로서 '위 토지 지상 건축물도 포함한다'는 내용이 추가된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한 다음, 2003. 1. 22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)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, 비닐하우스 등(이하 '이 사건 지장물'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 'F'이라는 상호로 콩나물 재배 및 판매업을 하는 농원을 운영하였고,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매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지장물에서 계속하여 농원을 운영하였다.

나. 피고 B과 D 사이의 화해권고결정 등

1) 피고 B은 2007. 3.경부터 D과 그의 처 G(이하 'D 등'이라 한다)에게 사업운영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26

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오던 중 D 등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, 2010. 3. 25.경에 이르러 D 등으로부터 그 당시까지의 대여금채권 3,882,947,513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 및 D 등의 [redacted]공사에 대한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금채권(이하 '이 사건 보상금채권'이라 한다)을 양도(이하 '이 사건 채권양도'라 한다)받았다고 주장하면서, D 등을 상대로 하여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촉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(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0가합2294호).

2) 위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0. 4. 30. 피고 B과 D 등 사이에 '1. D 등은 [redacted]공사 및 [redacted]시장에게 이 사건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 2. D 등은 이 사건 지장물이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'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(이하 '이 사건 화해권고결정'이라 한다)이 이루어졌고, 그 무렵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.

다. 이 사건 보상금채권에 대한 양도통지 및 압류와 [redacted]공사의 공탁 등

1) 피고 B을 대리한 변호사는 2014. 3. 21. [redacted]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사본을 첨부하여 '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 사건 보상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니, 이 사건 보상금채권을 피고 B에게 지급하여 달라'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고, 그 무렵 위 통지서는 [redacted]공사에게 도달하였다.

2) 한편 원고와 C, 주식회사 [redacted]주유소, 피고 [redacted]시, [redacted]시는 이 사건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다.

채권자	채무자	제3채무자	근거	제3채무자 도달일자	청구금액(원)
원고	D	[redacted]공사	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(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4타채10163호)	2014. 12. 19.	2,576,785,633
C	D	[redacted]	채권압류 및 추심명령	2015. 2. 27.	150,000,000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26

		주택공사	(수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5타채1373호)		
주식회사 [redacted]주유소	D	[redacted] 주택공사	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(수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5타채1448호)	2015. 3. 4.	49,250,629
피고 [redacted]시	D		채권압류	2015. 10. 20.	9,979,780
피고 [redacted]시	D		채권압류	2015. 11. 11.	7,010,290

3) 이에 [redacted]공사는 H사업의 시행자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한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금에 대하여 2017. 5. 22. 'D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고,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피고 B의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 있으며, D에 대한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점'을 공탁원인으로 하고, D, 원고 및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금 237,121,590원을 혼합공탁하였다(수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7년 금제1124호, 이하 '이 사건 공탁'이라 하고, 이에 따른 공탁금을 '이 사건 공탁금'이라 한다).

4) 피고 [redacted]시는 2018. 4. 20.에 이르러 이 사건 보상금채권에 대한 피고 [redacted]시의 압류에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 채권압류를 해제하였다.

라.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

1) 원고는 2011. 3. 14. D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(수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1가단5972호, 이하 이에 따라 진행된 소송절차를 '제1 관련 소송절차'라 한다), 위 법원은 2011. 9. 22. '원고와 D 등 사이에 2003. 3.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, D 등이 2008. 7.경부터 월 10,000,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, 원고가 소장 부본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26

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으므로, D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 중 위 시설물이 설치된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'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이에 대하여 D 등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([redacted]지방법원 2011나35279호), 항소심 법원은 2012. 4. 19. D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.

2) 피고 B은 2017. 7. 4. D, 원고, C, 주식회사 [redacted]주유소 및 피고 [redacted]시, [redacted]시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B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([redacted]지방법원 2017가합27216호, 이하 이에 따라 진행된 소송절차를 '제2 관련 소송절차'라 한다), 위 법원은 2018. 4. 4. '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 B에게 귀속되었다'는 이유로 피고 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([redacted]법원 2018나2022426호), 항소심 법원은 2018. 10. 1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음), 을가 제2 내지 4,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[redacted]시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 [redacted]시의 본안전 항변

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, 피고 [redacted]시는 이 사건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, 피고 [redacted]시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26

나. 판단

1)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·위험이 있고 그 불안·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,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·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1997. 10. 16.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, 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).

2) 살피건대, 피고 [redacted]시가 2018. 4. 20.에 이르러 이 사건 보상금채권에 대한 피고 [redacted]시의 압류에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 채권압류를 해제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,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, 피고 [redacted]시는 이 사건 공탁의 원인사실인 이 사건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, 더 이상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투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한다거나, 원고가 그 불안·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피고 [redacted]시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.

3) 따라서 원고는 피고 [redacted]시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, 피고 [redacted]시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.

3. 원고의 피고 B, [redacted]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26

1) 원고는 2003. 1. 21.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, 설령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이 D에게 있고, 피고 B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의 이 사건 보상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먼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, 피고 B의 이 사건 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.

2) 따라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, 원고는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인 피고 B, [redacted]시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가 제1,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보상금의 대상물인 이 사건 지장물이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과 동일하여 원고의 소유라거나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1)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인 2003. 1. 21.경 매매목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인 콩나물 재배사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, 2004. 1. 17.경 D이 운영하던 농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지장물 중 살수기, 콩나물세척기, 냉동기, 온풍기와 같은 기계설비와 샌드위치 벽체판넬, 비닐하우스와 같은 가설건축물 등이 상당 부분 소실되었고, 그 후 D은 농원 영업을 위하여 비닐하우스와 기계설비 등을 다시 설치·축조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,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한 건축물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26

이미 2004. 1. 17.경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대부분 소실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, 원고가 매수한 건축물과 D이 재설치한 이 사건 지장물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

2)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290,000,000원 중 지상 건축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20,000,000원에 불과하였던 반면, [redacted]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합계 237,121,590원에 이르렀던 점, 게다가 이 사건 보상금에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외에 건축물 내·외부에 설치된 콩나물 재배에 필요한 냉동기, 살수기 등 각종 기계설비에 대한 보상금도 적지 아니하게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보상금에서 원고가 매수한 건축물 중 화재로 소실되지 아니한 잔여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.

3)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1. 3. 14.경 D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 제1 관련 소송절차에서 '원고와 D 등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D 등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하였음'을 이유로 D 등에게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, 원고는 제1 관련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이 D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철거를 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.

4) 원고는 제1 관련 소송절차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4. 12.경 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4타채10163호로 D의 [redacted]공사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,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보상금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26

권이 D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.

5) 피고 B은 2007. 3.경부터 D 등에게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오던 중 D 등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, D 등과 사이에 2008. 6. 9.경 'D 등이 2008. 7. 5.까지 피고 B에게 1,400,000,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지장물을 양도하기로 한다'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, 2008. 9. 1.경 다시 'D 등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장물과 그 보상금채권의 소유권을 이전한다'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, 원고의 피고 B, [redacted]시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 중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, 원고의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, 제1심 판결 중 피고 B, [redacted]시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, [redacted]시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설범식

판사 김재형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26

판사 채동수